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개선 및 단축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재원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명확화(안 제4조)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택지’의 조성면적을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면적의 합으로 명확히 하고, 주택건설용지가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명확히 함.

나. 폐기물 광역처리 시 관계 지방정부 간 협의의무 신설(안 제4조)

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규 주거단지 조성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부담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가됨.

- 2)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 여부 결정에 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다.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 상한 상향(안 제5조)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지원기금 재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2) 주민지원기금 재원 중 폐기물처리수수료 가산금의 상한을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20% 이내로 상향함.

라. 동일 부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시 행정절차 단축(안 제10조의2, 제18조)

- 1)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법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및 위치의 변동이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만 증가함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함.
- 2)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나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및 위치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에서 제외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이하”를 “주택건설용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택지의 조성면적은 주택건설용지 면적과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합계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있는”을 “있고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으로 한다.

제5조 중 “10을”을 “20을”로 한다.

제10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및 위치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제외한다.)

제1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법 제17조의2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및 위치의 변동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조성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발사업에 관한 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구역 지정의 고시를 한 택지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후단 신설>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 ----- ----- ----- -----주택건설용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 이 경우 택지의 조성면적은 주택건설용지 면적과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합계로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2. ----- ----- ----- ----- -----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
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4. (생략)

⑤ ~ ⑩ (생략)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
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
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
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
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있고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미리 협의한 -----
--

3. 4. (현행과 같음)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

----- 20을 -
-----.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
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

1. 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
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다만,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변
경하는 경우로서 선정된 입지
의 부지면적 및 위치가 변경

4. (생략)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u>되지 아니하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제외한다.)</u> 4. (현행과 같음)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법 제17조의2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및 위치의 변동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u>
--	---